

제 249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제2차 본회의(2020.6.24.)

---

#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---



총무위원회

# 목 차

- 1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.. 1
- 2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..... 9

#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 6. 24.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6. 2. 신재화 의원 등 8인 발의
- 다. 회부일자 : 2020. 6. 1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 
(2020. 6. 22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신재화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명 변경
- 2)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 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3) 지원범위 규정 (안 제4조)
- 4) 조문정비 (안 제5조 ~ 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최주현]

본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,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(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⇒ 거창군 자율방범대·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) 하였으며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추가 규정하였으며
- 안 전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우리군의 외국인(다문화) 명예경찰대는 2016년 6월 29일 결성되어 별도의 임기 없이 결혼이주여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관내 외국인 사건 관련 신고 및 통역 활동과 관내 범죄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음.
-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함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붙 임 :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##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거창군 자율방범대·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군”을 “거창군”으로 “자율방범대”를 “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군”을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외국인 명예경찰대”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자율방범대와 연합회”를 “자율방범대와 연합회, 외국인 명예경찰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”를 “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
2. 방범초소 개선사업
3.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

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5조제2항 중 “군수는 자율방범대의”를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공적이 뚜렷한 자율방범대와”를 “공적이 현저한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자율방범대원”을 “대원”으로 한다

제8조·제9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군</u>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<u>자율방범대</u>가 주민생활안전,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자율방범대”란 <u>군</u>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<u>자율방범대와 연합회</u>로 한다.</p>	<p><u>거창군 자율방범대·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</u>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<u>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</u>가 주민생활안전,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자율방범대”란 <u>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 <u>“외국인 명예경찰대”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<u>자율방범대와 연합회, 외국인 명예경찰대</u>로 한다.</p>

제4조(지원) ① 군수는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1. 방법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, 야식비, 출동비
2. 방법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
3. 체육대회 등 자율방법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4. 자율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자율방법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법대와 대원에게 「거창군 포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)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)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1.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
2. 방법초소 개선사업
3.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4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「거창군 포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)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<삭 제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0 6. 24.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6. 2. 심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
- 다. 회부일자 : 2020. 6. 1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 
(2020. 6. 22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심재수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1조, 2조)
- 2) 군수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3조 ~ 제4조)
- 3)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4)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최주현]

본 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
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6조에서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관내 활동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사업수요가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
-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붙 임 :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**

##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장애인 문화예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이하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
2.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4.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

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)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
2.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3.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, 전시 등 활동 지원
4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
5.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